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수로·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1호중 마호부터 아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2호 및 별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5호를 삭제한다.

별표12중 9호 및 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4호 및 별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부터 별지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부터 별지 제36호중 “측량(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43호부터 별지 제48호중 “측량(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50호부터 별지 제5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항행통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6호에 따른 항행통보는 1주일에 한 번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한 다.		제2조(항행통보) 삭제		
② 항행통보는 우편 또는 전자 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수령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행통보 신 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2장 측량		
제5절 수로조사		<삭 제>		
제29조(수로조사의 실시) 영 제27		<삭 제>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水深) 30미터 미만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 역으로서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항만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 해당
하는 해역

3. 「어촌·어항법」 제2조제3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
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에 해당하는 해역

4. 「개항질서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
에 해당하는 해역

제30조(수로조사의 종류별 조사
항목)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
라 공사등의 종류별로 실시하여
야 하는 수로조사의 항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공사: 해당 공사구역에서
의 해안선의 측량,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해저지질의
조사

2. 항로준설(航路浚渫), 해저에
서의 흙·모래·광물 등의 채
취: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
지형 및 수심의 측량, 해저지
질의 조사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
土) 등을 버리는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 및

<삭 제>

수심의 측량, 해저지질의 조사

4. 매립, 방파제 · 인공안벽(人工

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의 측

량,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5. 인공어초(人工魚礎) 등 구조

물의 설치 또는 투입: 해당 공

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 및 수

심의 측량

6. 교량의 설치 또는 변경: 해당

교량의 교각 위치의 조사(교

각을 철거하는 공사인 경우에

는 철거 후 수심의 측량), 해

당 교량 밑을 선박이 안전하

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

조사

7. 공중 전선 등의 설치 또는 변

경: 해당 공중 전선을 지탱하

고 있는 양안(兩岸)의 지주(支

柱)의 높이 및 위치 조사, 해

당 공중 전선 밑을 선박이 안

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 조사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33조

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공

사등의 범위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로조사의 세부항목을 일부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당 조정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로조사의 신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조사를 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로조사 신고서에 수로조사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수로조사선의 표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사용되는 선박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33조(수로조사의 기술지도)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수로조사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로조사의 기준·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법 제31조

<삭 제>

제6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수로조사의 신고자 및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는 현장지도를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수로조사가 부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게 하는 내용과 그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방법과 세부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한다.

제34조(수로조사 실시 등의 공고)

법 제32조에 따른 수로조사의 구역·기간·내용은 해당 수로조사를 시작하기 5일 이전에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수로조사성과의 심사) ①

<삭 제>

<삭 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성과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로조사성과 심사 신청서에 수로조사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수로조사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조사협회에 수로조사성과를 심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조사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4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로부터 제

출받은 성과심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로조사성과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로조사성과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수로조사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해양조사협회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부터 수로조사성과의 심사를 통지받은 때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협회에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7조(수로조사성과의 공표 및 사본발급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1. 수로도서지에 수록
 2.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3. 항행통보에 게재
 4.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발표
-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1. 사업계획서(수로도서지 판매
망 설치 현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
당한다)

3. 설비 구입을 증명하는 영수
증 등 관련 서류(수치제작물
의 대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
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
는 신청인이 영 제29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
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
27호서식의 수로도서지 판매대
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제39조(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의 지정취소 등) 법 제35조제6
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은 별표 3과 같다.

<삭 제>

제40조(수로도서지 복제 등의 승
인신청) 영 제30조에 따른 수로
도서지 복제·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
과 같다.

<삭 제>

제41조(수로조사성과 등의 제출 요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수로조사의 계획 또는 성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목적·위치·기간
2. 조사방법 및 조사장비
3. 자료처리기법
4. 최종 결과물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제45조(수로기술자 신고 등) 수로기술자의 신고 및 수로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기술자”는 “수로기술자”로, “공간정보산업협회”는 “해양조사협회”로, “측량기술경력증”은 “수로기술경력증”으로 본다.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제54조(수로사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삭 제>

제6절 측량기술자

<삭 제>

제7절 측량업

제54조 <삭 제>

제55조(수로사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수로사업등록수첩 및 수로사업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수로사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수로사업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①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수로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로사업 변경등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로사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관련 사진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

<삭 제>

<삭 제>

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자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수로 기술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 변경의 경우: 변경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u>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u> 4. <u>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u>	
<u>제57조(수로사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제58조(수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u>	<u><삭 제></u>
<u>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u>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수	<u>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u> ① ----- ----- ----- ----- ----- 토

로·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수로·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제113조(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

지이동조사 -----

② -----

-- 토지이동조사 -----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

----- 국토지리정보원장-----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토지리정보원장-----

<삭 제>

무의 위탁) ① 법 제105조제2항 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표(燈標), 등부표(燈浮標), 돌핀 등에 설치된 해양관측시설 중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관리하는 관측시설의 관리

2. 해양관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해양조사협회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의 관리

3. 그 밖에 접근성, 난이도 등 관리 여건과 해양조사협회의 기술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의뢰하는 관측시설의 관리

② 법 제105조제2항제7호 및 영 제104조제9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 보유하는 조사선을 사용하여 해저지형, 지자기(地磁氣), 중력, 해저지층에 관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

획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자료의 기밀유지 및 소속 직원
업무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접 분석·처리하는 것은 제외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0
5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
에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석·처리 방법과 절차, 기술
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을 정하
여 고시한다.

제115조(수수료) ①·② (생략)

③ 법 제106조제1항제7호에 따
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④ 법 제106조제1항제8호에 따
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
인 신청 수수료 산정기준은 별
표 15와 같다.

⑤·⑥ (생략)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
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15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
보원장-----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